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24
----------	-------

발의연월일 : 2018. 10. 19.

발의자 : 황주홍 · 김광수 · 김종회

박주현 · 경대수 · 이양수

이종걸 · 이찬열 · 오영훈

윤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선박을 탐지하고 통신장비를 설치·운영하여 선박에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선박의 안전 운항에 중요한 사항임.

그런데 현행법령에서 선박교통관제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위임되어 있을 뿐이며, 해당 소관은 해양수산부, 선박교통관제 담당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책임과 집행기관을 일원화하고 법체계를 간소화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으로 분산되어 있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고 법체계를 간소화하여 선박교통관제 환경 변화에 즉시 대비·대응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는 선박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다. 선박소유자는 국가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자기 가 소유·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5조).
- 라.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은 「해사안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함(안 제8조).
- 마.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은 「해사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시행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함(안 제9조).
- 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정하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여야 함(안 제10조).

- 사.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선박교통관제 대상 선박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 할 수 있음(안 제11조).
- 아. 선박교통관제 대상 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함(안 제13조).
- 자. 선박교통관제 업무는 선박교통관제사가 아니면 할 수 없고,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여야 함(안 제15조).
- 차.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교통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 업무절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여야 함(안 제18조).
- 카.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및 무선중계장비 등 선박교통관제 업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2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교통관제”란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며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3. “선박교통관제사”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내수에 있는 선박 중에서 제12조에 따른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선박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선박소유자의 책무) 선박소유자는 국가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자기가 소유·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선박교통 관제에 따르도록 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 교류·협력의 증진)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와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단체 등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연구 등 국제 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8조(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해사안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

기 위하여 매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해사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 시행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과 수립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관제대상 선박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는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관제대상선박)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3.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4.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

제13조(선장의 의무 등)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이동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지정된 주파수로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다른 통신주파수를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 자체 없이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대상선박의 신고절차,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제통신의 녹음) 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기관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 녹음방법과 보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등) ① 관제업무는 선박교통관제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

③ 선박교통관제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이에 따른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자격인증 교육기관의 지정) ① 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관제사

를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교통 관제사 자격인증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에 대한 관찰 확인·안전정보제공·조언·권고 또는 지시
2. 기상특보의 발표나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3.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선박 입출항 신고접수·선석·정박지·도선·예선 정보 등 항만운영정보의 제공
4. 개항 질서 단속지원(수상구역), 출항통제 및 출항 중지 업무 지원

5.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8조(관제업무 절차) ① 선박교통관제사가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이 명백한 사고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 절차를 따르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업무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상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에 의한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입·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비함정 출동과 도선 또는 예선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선박교통관제사의 면책) 선박교통관제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은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있다.

제21조(관제시설의 설치·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관제업무를 위한 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설의 수리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시설에 대한 관리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① 관제시설은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그 성능을 개량하려는 때에는 가급적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기능 및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기술의 개발·지원)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이하 “관제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 활동
2. 선박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및 평가,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연구 및 사업수행
3. 선박교통관제 시설의 발전과 기술향상에 관한 연구
4. 선박교통관제로 인한 해상사고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국내외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연구

6. 선박교통관제분야 국내외 유관기관 간 학술교류,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분야의 발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제협회가 수행해야 할 사업

② 관제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가는 관제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관제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제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호출응답

용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6항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 신고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

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별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제21호를 삭제한다.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07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110조제15호, 제15호의2 및 15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제9호의2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